D - 31 - 2012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

2012. 7.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김 재 현

○ 개정자 : 한 인 수

- o 제·개정경과
  - 1997년 7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1997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에서 심의
  - 2002년 11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2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2년 7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API RP 520 및 521
  - BS 6759
  - ICI CODE PSG No.8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(안전밸브 등의 설치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61 조(안전밸브 등의 설치)의 규정에 의거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액체를 취급하는 배관에 설치하는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치대상, 배출용량, 크기, 설정압력 및 배출물질의 처리 등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열팽창용 안전밸브(Liquid thermal relief valve)"라 함은 2개 이상의 밸브 또는 맹판(Blind flange) 등으로 차단된 배관내의 액체가 외부 열원에 의한 열팽창으로 인해 배관이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를 말한다.
  - (나) "열원"이라 함은 태양열, 수증기, 열매유, 전기 등과 같이 내부 액체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에너지 발생원을 말한다.
  - (다) "배관계"라 함은 열원에 의하여 액체가 가열되는 가열로, 열교환기, 용기 등 화학설비를 포함한 배관 시스템을 말한다.
  - (라) "상변화(Phase change)"라 함은 액체가 증기 또는 액체의 일부가 증기로 기화하는 상태변화를 말한다.

D - 31 - 2012

- (마) "최고허용압력(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)"이라 함은 용기, 배관, 밸브, 플랜지 등의 제작에 사용된 재질의 두께(부식여유 제외)를 기준하여 산출된 허용가능한 최고의 압력을 말한다.
- (바) "설정압력(Set pressure)"이라 함은 설계상 정한 분출압력 또는 분출 개시 압력으로서 이름판에 표시된 압력을 말한다.
- (사) "배압(Back pressure)"이라 함은 안전밸브의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 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설치대상 및 설치위치

### 4.1 설치대상

열팽창용 안전밸브는 인화성 물질, 가연성 가스, 독성물질 및 물 등을 액체 상태로 취급하는 배관계가 2개의 밸브로 차단되어 다음 각호와 같은 열원에 의해 가열되는 경우에 설치한다.

다만, 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열교환기의 냉각용 배관계에 한하여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설치한다.

- (1) 가열로 또는 열교환기와 같은 공정열
- (2) 수증기, 열매유 또는 전기에 의한 배관 가열
- (3) 태양의 복사열
- (4) 대기온도 상승

### 4.2 설치대상 제외

4.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.

D - 31 - 2012

(1) 차단된 배관계에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는 경우

(2) 액체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도록 밸브 자체에 기계적 조치 등을 한 경우

(3) 전기 등을 이용하여 배관계를 가열할 때 배관내의 액체가 운전온도 이상 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온도 조절장치 또는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

(4) 태양의 복사열 또는 대기온도 상승에 의한 열원이 배관계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

4.3 설치위치

열팽창용 안전밸브는 배관계가 밸브 등에 의하여 차단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# 5. 배출용량 및 크기

## 5.1 배출용량

배관계의 용량이 크거나 또는 열팽창용 안전밸브에서 과도한 상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배출용량을 결정한다. 다만, 열팽창용 안전 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상 변화가 없으며 배관계 내의 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배출용량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.

$$W = \frac{Q_F \cdot \beta}{S}$$

W : 배출용량 (kg/h)

 $Q_F$  : 유입열량 (kcal/h)

S : 유체의 비열 (kcal/kg·℃)

D - 31 - 2012

### 5.2 유입 열량

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열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- (1) 가열로 또는 열교환기에 의하여 배관계 내의 유체가 가열되는 경우에는 가열용량 또는 열교환 용량을 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열량으로 한다.
- (2) 태양의 복사열 또는 대기온도 상승등에 의하여 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열량은 다음과 같은 시행착오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.
- ① 배관계의 외부 표면온도 T<sub>0</sub>를 가정한다.
- ② 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열량 Q<sub>F</sub>를 계산한다.

$$Q_F = U_F \cdot A_o \cdot (T_o - T_F)$$

Q<sub>F</sub>: 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열량(kcal/h)

 $U_F$  : 배관계 내의 유체와 외부 표면 사이의 열전달 계수  $(\text{kcal/h} \cdot \text{m}^2 \cdot \mathbb{C})$ 

Ao: 배관계의 외부 표면적(m²)

 $T_{o}$  : 배관계의 외부 표면온도( $^{\circ}$ C)

T<sub>F</sub> : 유체의 온도(℃)

③ 대기로 유출 또는 대기에서 유입되는 열량  $Q_A$ 를 계산한다.

$$Q_A = U_A \cdot A_o \cdot (T_A - T_o)$$

QA: 전도·대류에 의하여 대기로 유출되는 열량 또는 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열량(kcal/h)

 $U_A$  : 배관계 외부표면과 대기 사이의 열전달 계수 $(kcal/h \cdot m^2 \cdot \mathbb{C})$ 

A<sub>o</sub>: 배관계의 외부 표면적(m<sup>2</sup>)

 $T_{o}$ : 배관계의 외부 표면온도( $^{\circ}$ C)

T<sub>A</sub> : 대기온도(℃)

D - 31 - 2012

④ 태양의 복사열에 의하여 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열량 Qs를 계산한다.

$$Q_s = A_r \cdot \alpha \cdot q_{sr}$$

Qs: 태양의 복사열에 의하여 배관계 내로 유입되는 열량(kcal/h)

A<sub>r</sub> : 태양이 수직으로 비치는 배관의 면적(m<sup>2</sup>)

α : 흡수율(보온재로 시공되지 않은 배관 : 0.9, 보온재로 시공된

배관 : 0.4)

q<sub>sr</sub>:태양의 복사에너지(750 kcal/h·m<sup>2</sup>)

- ⑤ 수증기, 열매유 또는 전기에 의하여 배관계를 가열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에 의한 열량( $Q_E$ )이 모두 배관계로 유입되는 것으로 한다.
- ⑥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 $Q_F$ ,  $Q_A$ ,  $Q_S$  및  $Q_E$  를 가감하여 열수지를 검토한다.

$$Q_F = Q_A + Q_S + Q_E$$

① ⑥항 열수지의 좌·우가 같아 질 때까지 ①에서 가정한  $T_0$ 를 조정하여 ①  $\sim$  ⑥의 단계를 반복한다.

#### 5.3 크기

5.3.1 배출물질의 상변화가 없는 경우

열팽창용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상변화 없이 액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5.1항의 배출용량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도록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크기를 선정한다. 통상적으로 열팽창용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상변화가 없으며 배관계 내의 내용적이 작은 경우에는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인입측 배관 호칭지름은 15㎜ 또는 20㎜, 토출측 배관 호칭지름은 20㎜ 또는 25㎜로 하며, 오리 피스의 크기는 최소한 36㎜²로 한다.

KOSHA GUIDE

D - 31 - 2012

5.3.2 배출물질의 상변화가 있는 경우

열팽창용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상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즉,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 증기-액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열팽창용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증기 및 액체의 양을 각각 고려하여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크기를 계산하여야 한다.

## 6. 설정압력

밸브 또는 맹판 등에 의하여 차단될 수 있는 배관계내의 배관, 밸브, 플랜지 및 용기 등과 같은 모든 화학설비 중에서 설계압력이 가장 낮은 화학설비의 설계압력을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으로 하여야 한다.

일반적으로 플랜지의 최고허용압력을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배관계 내의 밸브, 배관 및 화학설비의 최고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은 플랜지의 최고허용압력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.

### 7. 선정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토출측 배관을 저장탱크, 밀폐된 용기, 펌프 인입측 배관 등 밀폐계로 연결하여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열팽창용 안전밸브 후단에 미치는 배압을 고려하여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선정한다.

7.1 배압이 설정압력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토출측 후단에 걸리는 압력이 열팽창용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사용한다.

7.2 배압이 설정압력의 10~30% 이내인 경우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토출측 후단에 걸리는 압력이 열팽창용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 $10\sim30\%$  이내인 경우에는 배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된 벨로우즈형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사용한다.

D - 31 - 2012

7.3 배압이 설정압력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토출측 후단에 걸리는 압력이 열팽창용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을 상향조정하여 배압이 설정압력의 3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설정압력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배관계의 설계압력이 열팽창용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이상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8. 배출물질의 처리

열팽창용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급성독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방법을 선정하여 처리한다.

### (1) 공정계 내로 재유입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토출측 배관을 밸브 또는 맹판 등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 저장탱크 또는 저압용기 등의 인입 또는 출구배관등으로 연결하여 공정계 내로 회수할 수 있다.

### (2) 밀폐된 용기로 배출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토출측 배관을 밀폐용기로 연결하여 배출물질을 회수한다.

### (3) 소각후 대기배출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토출측 배관을 후레아 헤다 등에 연결하여 후레아 스텍 또는 소각설비에서 연소처리 할 수 있다.

### (4) 세정후 대기배출

열팽창용 안전밸브의 토출측 배관을 세정탑 등에 연결하여 세정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다.